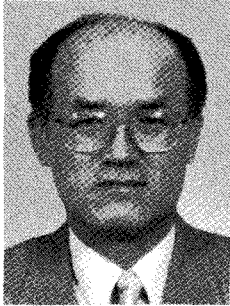


어음거래의 역기능과 순기능

— 우리 나라 어음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



민 중 기

대한상의 이사

I. 머릿말

우리 경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한보·기아 등 대기업의 연쇄부도가 이어지면서 급기야 지난 연말에는 IMF로부터 긴급 금융지원을 받게 되는 국가적 경제위기에 직면하였다.

금년 1/4분기중 어음부도율이 0.54%로 '82년 장영자 어음사기사건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부도업체수도 월평균 3,149개 업체로 '97년의 평균 1,430개 업체를 상회하였다. 향후 기업부도 증가세는 내수침체 및 구조조정의 지속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이러한 높은 어음부도율은 주로 어음수취기업에 해당하는 하도급기업(주로 중소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연쇄부도 등을 통하여 신용사회의 기초를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차제에 어음제도 자체를 폐지하여 상거래의 현금 결제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어음거래를 대체할 만한 신용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고, 자금유동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어음제도를 단기적으로 폐지할 경우 대금회수가 불투명한 외상거래 증가, 대기업의 하도급거래 축소 등으로 실물거래가 오히려 축소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행 어음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및 그 실태를 살펴본 후에, 어음의 역기능

을 최소화하면서 자유로운 상행위를 억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바람직한 어음제도의 개편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어음거래의 순기능과 역기능

오늘날 우리 경제에 신용 결제수단으로서 중요한 자리를 잡고 있는 어음은 고유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가지고 있다.

어음의 순기능은 크게 두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첫째, 실물거래를 지원한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하도급거래가 일반화된 우리 경제에서 거래 쌍방간의 연속적인 실물거래를 원활히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판매자가 구매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파악하기 용이하다는 점에서 금융기관의 자금중개 기능에 비해 거래비용이 저렴하다.

둘째, 유동성 제약을 보완하는 기업간 신용제도의 기능을 들 수 있다. 어음은 기업간 신용이면서도 금융기관을 통한 할인 및 시장유통이 가능함으로써 유동성이 보장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어음의 신용창조력과 유통성은 기업의 구매력을 창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경제생활 규모를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반면에 최근 어음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바와 같이 어음의 역기능으로는 첫째, 어음결제일이 장기화될 경우 금융비용의 발생 등으로 판매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킨다는 점이다. 즉, 어음거래가 대기업의 우월적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관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

둘째, 어음유통 규모가 과다할 경우 통화량 조

절을 통한 금리정책의 실효성을 훼손시킨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셋째, 어음발행의 남발과 무제한 배서에 따른 신용교란 가능성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발행요건에 대한 제약이나 사후관리가 미흡할 경우 극심한 신용교란이 발생하여 금융경색시 연쇄부도를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

Ⅲ. 어음거래의 실태

먼저 우리 나라의 어음의 거래규모를 살펴보면 총통화에서 차지하는 현금통화의 비중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나, 어음의 거래규모는 총통화(M2)의 17.9배('97년)를 차지하여 일본의 3.1배('96년)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어음결제 비중이 신용거래의 확대와 기업의 자금난으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어음거래비중이 39%('94년)인 반면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체의 경우 판매대금 결제수단중 어음이 차지하는 비중이 55.7%('96년)에 달하고 있다.

◆ 중소기업의 판매대금 결제방법의 주이 ◆

(단위: %)

	'93	'94	'95	'96
어음	56.2	56.6	57.5	55.7
현금	29.4	28.2	30.3	29.4
외상	14.4	15.2	12.2	14.9

※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

어음의 평균 결제기간도 경기침체와 IMF위기를 반영하여 점차 장기화되고 있다. 즉, '96년 98.8일에서 IMF자금을 지원받은 4/4분기 121.7일, 금년 1/4분기 123일로 최근 들어 더욱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기별 어음

비중을 보아도 90일 이상의 장기결제어음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 어음 결제기일의 주이 ◆

(단위: 일)

'96	'97				'98 1/4
	1/4	2/4	3/4	4/4	
98.8	117.5	117.1	118.6	121.7	123

※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경영실태 및 동향"

그리고 중소기업이 수취한 어음을 현금화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을 받는 비중이 57.1%에 불과하여 일본(신나천현)의 72.8%와 비교하여 볼 때 우리 기업들이 어음수취에 따른 자금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중소기업의 수취어음 현금화 방법 ◆

(단위: %)

금융기관 할인	만기일까지 보유	지급수단으로 활용	기타
57.1	14.8	21.9	6.2

※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실태조사보고"

한편, 주요국의 기업간 결제관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주요국의 기업간 결제관행 ◆

국 가	주 요 내 용
일 본	- 결제수단으로 현금과 어음('94년: 39%)을 주로 이용 - 수표에 대한 형사면책외에 어음제도는 우리나라와 유사(양도·배서, 부도시 형사면책, 중앙은행 재할인) - 상업어음은 거의 전액할인되고 있으며, 신용조사 기법의 발달 등으로 팩토링이 어음제도를 대체하는 단계

국 가	주 요 내 용
대 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제수단으로 우리의 어음과 유사한 기능 (배서·양도, 금융기관 담보대출·할인, 부도시 형사면책)의 “지표” 사용(전체거래의 80% 이상) - “지표”의 평균만기가 90일이고, 수취기간이 30일 정도 소요됨에 따라 납품대금의 현금화기간은 120일 정도
독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결제수단은 송금이며, 어음결제 비중은 어음제도의 엄격한 운용으로 10% 정도로 축소 - 어음의 배서·양도가 불허되며, 은행의 할인대상 어음은 3인 보증의 만기 3개월 미만인 것으로 제한 - 대금결제 기간은 송금과 어음 모두 통상 30일 이내이며, 중앙은행이 상업어음을 재할인
이태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간 결제수단 LIBA, 어음, 현금중 LIBA에 의한 거래가 대부분 - 우리와 유사한 어음제도가 있으나 거래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인지세 부과로 어음유통이 현저히 감소하여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음 - LIBA는 납품기업이 이를 발행하여 은행에 제출하면 9.5%의 할인율로 할인이 가능(LIBA 할인시 납품계약서만 제출)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결제수단은 어음과 수표이며, 어음결제 비중이 80%로 유럽국가들 중 가장 높음 - 우리 나라와 달리 1차 유통만 가능하며, 배서·양도는 불허되고, 납품대금의 현금화 소요기간은 약 75일 소요
미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세기 초부터 어음거래가 점차 축소되어 현재는 수표가 기업결제의 주요수단이며, 우리와 같은 어음제도가 없음(최근에는 전자결제보급에 따라 계좌이체가 증대) - 상업어음 할인에 의한 자금차입방식이 기업어음(CP)으로 발전·대체 -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금융지원은 대금청구서(invoice)에 의한 팩토링이 발달되어 어음할인을 완전히 대체

Ⅲ. 어음제도의 문제점과 폐해

우리 나라의 어음제도는 주요국의 기업간 결제관행과 비교하여 볼 때, 어음발행요건의 미비, 어음발행에 대한 금융기관의 통제 미흡, 제한없는 배서·양도, 부도시 경미한 제재 등으로 다음과 같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일부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관행의 수단으로 어음을 이용한다는 점이다. IMF이후 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가운데, 일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결제대금으로 장기어음을 발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다. 예를 들어 60일이 초과하는 장기어음 발행시 초과 기간에 대하여 어음발행인이 할인료를 어음교부일에 지급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행 하도급법도 도급업자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수급업자가 고발하지 않으면 법적제재를 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둘째, 어음부도에 따른 사후제재가 경미하여 무분별한 어음발행을 조장하는 동시에 어음거래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 어음부도는 당좌수표와는 달리 민사상 처벌밖에 없고, 부도후 해당금액만 변제하면 적색거래처에서 해제되어 은행거래 및 당좌거래를 할 수 있고, 또, 1년에 3회까지 부도가 발생하더라도 최종부도(2차부도)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1차부도 사실이 비공개되는 등 선진국에 비하여 경제적 제재도 경미하다.

셋째, 어음수취기업이 단기자금조달원으로 활용되는 어음할인이 금융기관의 경직성으로 쉽지 않다. 어음할인 금리가 실제금리보다 낮고, 한국은행의 상업어음 재할인요건이 90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금융기관은 통상 장기어음의 할인을 의뢰하는 중소기업에 꺾기나 과도한 담보를 요구하고 있다.¹⁾

1) 총할인액 대비 담보부어음할인 73%이고, 신용부할인은 27%에 불과

더욱이 최근 IMF사태로 인한 금융산업의 구조 조정(엄격한 BIS자기자본 비율산정)으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담보를 제공하더라도 어음할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 중소기업 수취어음 은행할인 용이도 ◆

(단위 : %)

담보만 갖춰지면 할인이 잘 된다	담보가 있어도 할인이 안 된다	기타
30.0	52.3	17.7

※ 자료 : 중소기업청, "최근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조사"

넷째,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 발행한 어음이 즉시 현금화되지 않고 오랫동안 물품대금으로 유통되면서 배서인이 많아지고 유통도 더욱 활발해져 채권회수 지연과 연쇄도산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하도급구조 및 배서를 통한 어음의 무제한적 유통은 어음발행기업의 경영부실이 어음수취기업에 전가되는 부작용이 초래되는데,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나타나듯이 부실기업의 도산에 의해 해당기업의 발행어음을 수취한 거래기업들은 스스로의 경영 내용이나 결과와는 무관하게 연쇄적인 흑자도산의 위험성에 처하게 된다.

다섯째, 유통어음의 납받은 그 어음이 진성어음화되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며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 자금이 부족한 기업이 거래기업으로부터 물품납품등의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어음을 발급받아 은행에 할인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은 허위로 제출된 매출원장과 세금계산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비고의적으로 할인에 응하는데, 이는 어음거래의 본래 목적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자금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또한 사채업자가 아닌 기업이 자금이 부족한 기업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유통어음을 발급받은 뒤에 동 어음을 물품대금으로 배서

에 의해 연속적으로 유통시키는 경우에 당초의 유통어음이 실물거래를 수반하는 진성어음으로 탈바꿈하여 유통질서를 교란시킨다.

IV. 어음제도의 개선방향

어음제도의 개선은 금융제도 전반에 관련된 문제이며, 물품대금·하도급대금 대부분이 어음으로 지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어음제도의 폐지는 오히려 실물거래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담보력 부족에 따른 만성적인 자금난을 완화하여 실물거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주요 결제수단인 어음거래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어음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첫째, 현행 하도급법에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60일 초과시 이자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해 약자인 수급기업이 거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유명무실화되어 있다. 따라서 어음결제기간을 점진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현재 각 은행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개별기업의 어음결제기간을 조사하고 이를 공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둘째, 상거래에서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급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지도를 강력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및 중소기업청에 의한 대기업 위주의 조사방식을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조사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어음부도에 따른 경제적인 충격과 신용질서 교란의 악영향을 고려하여 부도기업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여야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부도기업자에 대한 당좌거래

금지기간(2년) 및 신용정보관리기간(3년)을 각각 5년, 10년으로 대폭 연장하는 등 어음부도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을 확대하고, 타인명의의 사업 재개도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다.

넷째, 신용이 취약한 부적격 기업의 무제한 은행당좌 개설 및 어음납발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하여 우선 금융기관의 당좌개설 요건 및 어음발행 요건을 현행보다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2년간 계속 결손으로 자본을 잠식하였거나 부채과다(부채비율이 1000% 이상)등 재산상태가 불량한 업체에서 기업 설립 후 1년이 경과하고, 최근 3년간 이익을 내고 자본잠식이 없으면서 부채비율이 300% 이하(또는 동업계 평균부채비율 이하)인 업체로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어음의 납발을 규제하기 위하여 일본의 인지세제도(어음금액의 0.02%~0.03%)와 유사한 어음발행부담금제 도입, 자기자본의 1~1.5배 또는 매출액 이내로 어음발행한도 제한, 복수당좌거래 금지, 적정어음교부량 설정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중소기업의 어음할인을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어음할인 금리 밴드폭을 확대하거나 BIS비율 산정시 중소기업 어음할인에 대한 비율조정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어음할인을 적극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최근 어음거래에 따른 문제가 대부분 어음발행기업의 신용정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발생하고 있는 바, 어음거래의 정상화를 위해서 가계와 기업의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신용공여기관에 제공하는 신용정보 관리제도를 선진국 수준(예 : 미국 D&B사의 PAYDEX)으로 확충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차원에서 기업과 금

융기관의 재무정보를 이용자가 활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투명하게 공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해외유력신용평가회사의 국내진출을 유도하는 것도 생각해 볼만 하다.

일곱째, 현행 어음보험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보험계약자 및 어음발행인의 신용도에 따라 보험금액의 1~2%인 보험요율을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율(7~1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그 차이는(보험금액-보험금수입) 정부의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음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세정관리 강화 차원에서 성실신고업체에 대한 세제상 혜택 부여로 자발적 신고 유도하는 한편, 허위계산서를 발행했거나 무자료거래를 한 기업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규정하고 있는 형사처벌을 예외없이 집행하여야 할 것이다.

V. 맺는말

어음제도가 구조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어음제도 자체가 우리의 실물·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볼 때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선 단기적으로 어음발행부담금 도입, 어음발행요건 강화 등 어음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어음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장기적으로 상거래 투명화 구현, 신용평가 기능 강화, 기업재무구조 건실화 유도를 통하여 선진적인 거래질서가 정착됨으로써 어음제도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환경을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